시 민

문서번호	도로계획과-4965
결재일자	2018.4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민자사업팀장	도로계획과장	안전총괄관	안전총괄본부장
협 조	도로관리과장			

I·안전·U 너와 나의 안전

도로유지관리차량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계획

2018.4

안전총괄본부

(도로계획과)

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*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*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–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□	■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–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–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	□	■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–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	□	■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–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–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–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–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	□	■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–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■	□	민간사업자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■	□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–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–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	□	■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□	
	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□	■	

도로유지관리차량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계획

우리시 도로유지관리차량의 강남순환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처리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

□ 추진배경

○ 현행 민자도로 실시협약상 도로유지 및 제설차량은 통행료 비감면대상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재난대응에 애로가 있어 통행료 감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○ 강남순환로의 경우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신속대응을 필요로 하는 제설차량, 화물운송 차량이 먼 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운제제한 상향 검토 필요함.

□ 현　　황

○ 운영중인 민자도로 현황

구　　분	규　　모	개 통 일	통　행　료(원)
우면산터널	연장 2.96㎞, 왕복4차로	'04.01.06	경차 1,250, 그 외 2,500
용 마 터 널	연장 3.57㎞, 왕복4차로	'14.11.21	경차 750, 소형 1,500, 중형 2,500, 대형 3,200
강남순환로	연장 12.4㎞, 왕복6~8차로	'16.07.03	경차 800, 소형 1,600, 중형 2,800

○ 통행료 감면관련 실시협약 내용

-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민자사업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,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 차량은 감면대상 아님.

구　　분	협　　약　　내　　용
우면산터널	**사업재구조화 이후**('16.1월)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정처분가능 사업수입을 상회하여 **재정지원은 없음**
용 마 터 널 강남순환로	**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**에 의해 **통행료를 감면**하는 경우 **감면 대상차량의 실적치를 토대로 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**

▢ 감면대상 검토

○ 현재 실시협약상 도로유지 및 제설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이 아니나,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 감면이 가능함.

○ 총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은 강남순환로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제설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므로 운행제한 조건을 상향코자 함.

- 10톤이상 차량의 통행허용은 도로 구조변경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은 아니나,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·진동 및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가능(환경부 협의 결과).

▢ 감면방안 검토

○ 도로유지관리차량 등 추가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기존 통행료수입 감소 보전분에 포함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함.

【'17년 운행실적을 바탕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재정지원 예상액】

구 분	합 계	제설차량 (다목적카고, 덤프)	유지관리차량	행정차량
보유대수(대)	24	7	13	4
가동일수(회)	3,560	224	2,469	867
통행료(천원)	15,255	1,254	11,227	2,774

※ 총 보유대수 29대(건설기계 5, 제설차량 7, 유지관리 13, 행정 4) 중 건설기계 제외

○ 이러한 재정지원은 향후 민자도로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,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통행료 감면분을 사업시행자의 예상수익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함.

- 자본재구조화(비용보전방식, BTO-a 등)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예상수익에 반영하여 협약 변경 추진

▢ 감면절차 검토

○ **현재 시스템상 자동감면은 하이패스 등록차량중 장애인용 및 전기차량에 한정되고 그 외 경우는 모두 유인처리하고 있어, 향후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현행 시스템에 준하여 감면처리 시행이 필요함.**

- 강남순환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식별표를 감면차량에 부착하여 유인징수차로에서 징수원이 식별표 대조 후 감면대상 입력 처리함.

○ **통행료 감면 절차(안)**

① 감면대상 차량번호 제출(사업소, 자치구 → 도로계획과)
→ ② 식별표 발급(도로계획과 통합 발급)
→ ③ 감면차량 식별표 부착(사업소, 자치구)
→ ④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금액 적정성 검증(한국도로공사)
→ ⑤ 통행료수입 감소분 재정지원(도로계획과)

▢ 조치계획

○ **아래와 같이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하되, 도로유지관리 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면대상 검토후 추가 조정**

구 분		도로유지관리차량	제설차량	비 고
감면기간		상시	제설기간 (11.15~익년 3.15)	
감면대상	우면산터널	남부도로사업소	남부도로사업소, 서초구	
	용마터널	성동도로사업소	성동도로사업소, 중랑구	
	강남순환로	남부도로사업소	남부도로사업소, 서초구, 관악구	도로유지관리차량 10톤 미만 가능
감면시기		식별표 발급 즉시 (4월 중순예정)	'18년 하반기 신청 후 식별표 발급	
수 입 감소분 보전		- 현행과 같이 예산으로 통행료 지원하되 - 중·장기적으로 협약변경을 통하여 통행료수입 감소분 재정지원 삭제		

○ **강남순환로의 경우, 총중량 10톤 이상인 제설차량의 통행허용은 환경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발지 관할경찰서장 협의 후 우선 운행 허가**

○ **10톤 이상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물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남순환로 운행허용 검토 추진**

- 강남순환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 10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환경영향 등을 분석하여, 그 결과에 따라 처리. 끝.